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 신안산대학교 | 공간활용센터 운영규정 | 규정번호 3-1-23 제정일자 2024. 3. 20 개정일자 책임부서/팀·계 사무처 |
|---|--------------------|--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공간활용에 관한 사항 관리 · 운영하기 위하여 공간활용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공간활용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에는 센터장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센터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약간 명의 행정직원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면한다.

제3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시설에 대한 공간배정
2. 대학 내의 공간활용 계획수립
3. 그 밖에 대학의 공간활용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대학의 시설에 대한 중요 공간배정
 2. 시설물에 대한 신축 · 증축 · 개축 · 보수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대학 공간활용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,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 구성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운영위원회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5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